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1, 2, 3블록) 관리 기본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수 원 시 장

붙임 :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직성명	배성훈	전화 번호	031-228-2338
----------------	------------	-----	----------	--------------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I. 변경사유

- 조성시기에 따라 1·2·3블록으로 구분된 수원델타플렉스를 단일구역으로 통합하여 블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별 서로 다른 입주 허용업종을 통합하여 기업 활동의 불편을 개선·지원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변경내용
 - 수원델타플렉스 블록(1·2·3블록) 통합
 - 블록별 입주가능업종 통합
 - 폐수처리시설 용도폐지
 - 입주 허용업종 및 제한업종 기준 명확화
 - ※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은 신규입주업체 및 기존업체 등록변경 시 적용

Ⅱ. 수원델타플렉스 개요 (변경)

가. 관리기관 (변경)

기정)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변경) (사)수워델타플렉스관리공단

나. 조성목적 (변경없음)

-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IT·BT 등 핵심 첨단기술 업종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다. 추진경위 : 별첨 #5 (변경)

라. 분양현황 (변경)

(기정)

(단위 : m²)

л н		1블록			2블록			3블록	
구 분	총면적	분양	미분양	총면적	분양	미분양	총면적	분양	미분양
계	287,246.1	173,599.9	-	122,855.4	72,458.1	-	847,409.0	600,602.2	21,418.2
산업시설 구 역	153,872.2	153,872.2	-	70,534.2	70,534.2	_	577,396.2	577,396.2	_
복합구역	-	-	-	-	-	_	21,418.2	_	21,418.2
지원시설 구 역	14,788.1	14,788.1	-	682.1	682.1	_	13,550.5	13,550.5	_
공공시설 구 역	62,573.0	4,939.6	-	25,096.1	1,241.8	_	178,078.5	9,655.5	-
녹지구역	56,012.8	-	I	26,543.0	-	-	56,965.6	-	-
조성기간	2003 ~ 2006		2005 ~ 2009		2008 ~ 2016				
조성기관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변경)

(단위 : m²)

구 분	분 양 현 황				
<u>ਦਿ</u>	총면적	분양	미분양		
계	1,257,510.50	868,078.40	-		
산업시설구역	801,802.60	801,802.60	-		
복합구역	21,418.20	21,418.20	_		
지원시설구역	33,659.10	29,020.70	_		
공공시설구역	261,109.20	15,836.90	-		
녹지구역	139,521.40	_	_		
조성기간		2003 ~ 2016			
조성기관		수원시			

[※] 금회 폐수종말처리장 폐지로 인한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 변경(개발실시계획(변경) 참고)

마. 입주현황 (변경)

(기정)

(단위: 개사, 2020. 1. 1.기준)

					입 주 업 체 수			
구 분	계		1 블 록		2 블 록		3 블 록	
T T	/1	소계	개별공장	지식산업 센 터	개별공장	소계	개별공장	지식산업 센 터
계	728	337	116	221	46	345	227	118
제 조 업	633	274	116	158	46	313	226	87
비제조업	95	63	_	63	_	32	1	31

(변경)

(단위: 개사, 2021. 3. 1.기준)

7 14	¬ H ¬11		주 업 체 수
구 분	계	개별공장	지식산업센터
계	839	429	410
제 조 업	692	423	269
비제조업	146	6	141

바. 입지여건 (변경)

(기정)

기서며		규모및용량		ス 15Hフl ਹト
시설명	1블록	2블록	3블록	시행기관
도 로	• 대로1-10호선 : L=1,070m B=35m	 진입도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봉담IC로부터 2.5km권에 입지(국도 43호선에서 500m권내입지) 단지내도로 중로(3개노선): 1,288m 중로(1개노선): 105m(보행자전용도로) 	 진입도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봉담IC로부터 2.5km권에 입지(국도 43호선에서 500m권내입지) 단지내도로 대로(1개노선): 866m 중로(19개노선): 6,376m 소로(3개노선): 597m 	수원시
용수	• 공업용수 : 2,527㎡/일 • 생활용수 : 440.1㎡/일	• 공업용수 : 기정 885㎡/일 • 생활용수 : 기정 56㎡/일	• 공업용수 : 3,195㎡/일 • 생활용수 : 319㎡/일	수원시
전 력	• 소요량 54,304(Mwh/년) • 병점변전소 및 남수원변전소	 년간 119.68KVA 2,200KVA(2009년 이후 증가분) → 봉담변전소 신설예정 	• 년간 193,754MWh → 준공예정인 고색변전소에 서 공급	한국전력 공사
통 신	• 소요량 217회선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일반전화 등 통신시설 공급	• 소요량 114회선	• 소요량 1,031회선	㈜ KT
폐기물 처 리	• 발생량 8,481kg/일	• 발생량 49.5㎡/일	• 발생량 30.1㎡/일	자체처리, 위탁처리
폐 수 처 리	• 발생량 1,350㎡/일	• 발생량 417.3㎡/일	• 발생량 1,926㎡/일	수 원 시 위탁처리
에너지		• 6,432(Gcal/년)		㈜삼천리 도시가스

(변경)

시설명	규 모 및 용 량	시행기관
도로	 대로1-10호선: L=1,070m, B=35m 진입도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봉담IC로부터 2.5km권에 입지(국도 43호선에서 500m권내입지) 단지내도로 대로(1개노선): 866m 중로(22개노선): 7,664m 중로(1개노선): 105m(보행자전용도로) 소로(3개노선): 597m 	수원시
용수	• 공업용수 : 6,607㎡/일 • 생활용수 : 815.1㎡/일	수원시
전 력	・소요량 54,304(Mwh/년) → 병점변전소 및 남수원변전소 ・년간 119.68KVA(2,200KVA(2009년 이후 증가분) → 봉담변전소 신설예정 ・년간 193,754MWh → 준공예정인 고색변전소에서 공급	한국전력 공사
통 신	• 소요량 1,362회선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일반전화 등 통신시설 공급	(주) KT
폐기물 처 리	• 발생량 88,081kg/일	자체처리, 위탁처리
폐 수 처 리	• 발생량 3,693.3㎡/일	자체처리, 위탁처리
에너지	• 6,432(Gcal/년)	㈜삼천리 도시가스

Ⅲ.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가. 관리기본방향 (변경없음)

1) 목 표

- 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 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다)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가)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 나)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유지관리
- 다)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창출 기업유치
- 라) 관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확산

나.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분계획 (변경)

1) 용도별 구역 면적 (변경)

(기정)

(단위 : m² , %)

구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1,257,510.5	801,802.6	21,418.2	29,020.7	265,747.6	139,521.4
1블록	287,246.1 (100)	153,872.2 (53.6)	-	14,788.1 (5.1)	62,573.0 (21.8)	56,012.8 (19.5)
2블록	122,855.4 (100)	70,534.2 (57.4)	-	682.1 (0.5)	25,096.1 (20.5)	26,543.0 (21.6)
3블록	847,409.0 (100)	577,396.2 (68.1)	21,418.2 (2.5)	13,550.5 (1.6)	178,078.5 (21.1)	56,965.6 (6.7)

(변경)

(단위: m², %)

구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수원	1,257,510.5	801,802.6	21,418.2	33,659.1	261,109.2	139,521.4
델타플렉스	(100.0)	(63.8)	(1.7)	(2.6)	(20.8)	(11.1)

※ 금회 폐수종말처리장 폐지로 인한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 변경(개발실시계획(변경) 참고)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기정)

구분	1블록	2블록	3블록
산업 시설 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3을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함) 제2조에 따른 공장 및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 시설 구역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 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기타 공용의 청사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양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제외), 업무시설, 판매 및 역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하원 제외) 당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산집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의한 지원기관이 그사업을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산업단지의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장의사,안마시술소,고시원제외), 업무시설,판매 및 업시설,자동차관련시설(폐차당,대장, 안마시술, 판매 및 역사절,자동차관련시설(폐차당,대생로,자동차관련시설(폐차당,대생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악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아래의 시설 -근린생활시설(단란, 안마,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해당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 가능함.
공공 시설 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종류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완료집회장, 장의사, 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만매시설, 매대장, 운전학원 매시설, 매대장, 운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친자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친자장, 매대장, 운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친자장, 마라전전화투자, 경마장, 경륜장, 지동자경기장 제외), 업무시설 중지원 제외), 업무시설 중 제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자장업용 건축물 설치시 증무 보본은 건축법시행령 종류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왕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따린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판매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마권장기정, 자동차관련시설(마권장기정, 마건전화투표소, 자동학 및 집회시설(마권장기장 제외), 운동시설습자 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의학원 제외), 운동시설습장기장 제외), 운동시설습장기장 제외), 연무시설 중 관리기관이 있는 골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건축물	• 공원, 도로 등 산업단지 유지 에 필요한 시설
녹지 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주차장 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기 지원시설구역건축물의 범위를 준용함

^{※ 3}블록내 복합구역 제외

3블록 복합구역 : 별첨 #3 참조

л н	복합구역 (지원시설 + 산업시설)					
구 분	지원시설 용도(30%미만)	산업시설 용도(70%이상)				
허용용도	•기존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기숙사(근무자 편의 증대)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등 대형시설 입지 허용) •노유자시설(보육시설 입지허용)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공공의료시설 제외)	• 공 장 - 기존 1단계 허용업종(복합업종)				
	• 산업시설용도 : 기존지식산업센터 허용업종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원시설용도는 20%이내 허용					

(변경)

구분	건축물의 범위				
산업 시설 구역	공장의 부대 • 산집법 시행 • 산집법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통합이전 3블록 물류시설 부지에 한함) 			
지원 시설 구역	 산집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제2조제 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기타 공용의 청사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아래의 시설 -근린생활시설(단란, 안마,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고시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판매 및 영업시설(해당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 ※ 건축물 건축 시 개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 				
공공 시설 구역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기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의 범위를 준용함 · 공원, 도로 등 산업단지 유지에 필요한 시설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복합구역 (지원시설 +	지원시설용도 (30%미만)	 기존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기숙사(근무자 편의 증대)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등 대형시설 입지 허용) 노유자시설(보육시설 입지허용)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공공의료시설 제외) 			
산업시설)	산업시설용도 (70%이상)	• 공 장 - 기존 1단계 허용업종(복합업종)			
	지식산업센터	• 산업시설용도 : 기존지식산업센터 허용업종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원시설용도는 20%이내 허용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변경)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변경)

1)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기정)

업 종 별		계		
			필지수	면적(m²)
		계	48	153,872.2
	산업 시 설용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태양에너지 발전업(35), 마스크 제조업(13)	46	138,926.3
1 場 近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제품 제조업(33), 출판업(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태양에너지 발전업(35), 마스크 제조업(13)	2	14,945.9
		<u></u> Л	29	70,534.2
2 블 럭	산업 시설 용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태양에너지발전업(35)	29	70,534.2
		계	134	598,814.4
	산 업 시 설 구 역	소 계	125	577,396.2
		복합업종	109	513,185.2
3		출판업(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을 포함한 복합업종, 태양에너지 발전업(35)	13	28,572.0
비교 건		지식산업센터, 태양에너지 발전업(35)	2	23,552.0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52), 태양에너지 발전업(35)	1	12,087.0
	복합 구역	복합업종, 지식산업센터	9	21,418.2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 된 한국산업분류코드(KSIC-10) 번호 임
- ※ 1블록 마스크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 ※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근거 : 산통부 입지총괄과-586(2014.4.2.)호)
- ※ 복합업종 : 3블록 내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을 제외한 업종
- ※ 산업3블록 내 주요 유치업종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금속가공 제품제조업(25), 전자부품·영상·음 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제조업, 출판업(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태양에너지 발전업(35)
- ※ 3블록 지식산업센터(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지식산업 27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기 통신업, 태양에너지 발전업
-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52102 업종만 해당함.

(변경)

	업 종 별		계	
			면적(m²)	
	총 계		823,220.8	
	소 계		801,802.6	
	마스크 제조업(1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전기장비 제조업(28), 기 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 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제품제조업(33), 태양에너지 발전 업(35),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52), 출판업(58)	203		
산업 시설 구역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태양에너지 발전업(35), 출판업(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전기통신업(612), 지식산업 27종(산집법시행령 제6조제2항)	5	801,802.6	
복합	소 계	6	21,418.2	
구역	복합 구역소계복합업종, 지식산업센터		21,418.2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 된 한국산업분류코드(KSIC-10) 번호 임
- ※ 개별입지 마스크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 ※ 개별입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은 업종코드 세분류 31312에 한함
- ※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근거 : 산통부 입지총괄과-586(2014.4.2.)호]
- ※ 복합업종 :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기타 제품 제조업(33)을 제외한 업종
-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52102 업종만 해당하며, 물류시설 부지에 한하여 입주가능.

2) 배치기준 (변경)

(기정)

① 1블록

-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
-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함

② 2블록

• 융 • 복합추세를 반영하여 업종을 통합배치

③ 3블록

-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복합업종으로 배치
-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함.

(변경)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융·복합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1·2·3블록의 산업시설 구역을 하나의 관리권역으로 일원화하고 입주허용업종을 통합하여 배치
-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복합구역에 복합 업종으로 배치
-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함.
- 3) 업종별 배치도 : 별첨 #2 (변경)

라.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변경)

(기정)

1블록

- ① 산업용지(개별공장)
 - 마스크 제조업(1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기타 제품 제조업(33)
 -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 마스크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②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마스크 제조업(13)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제품 제조업(33)
- 출판업(58)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연구개발업(70)
-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 ※ 마스크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 ※ 단, 상기(개별, 아파트형공장)업종 중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입주제한
 -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도시형공장 중 폐수배출신고·허가 대상사업장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입주제한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10)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
 - ※ 기 승인사항(경기도 고시 제2013-170호(2013.6.20.))인 지식산업 센터내 입주업종 추가사항 반영
 - ※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정책 반영(근거:산통부 입지총괄과-586(2014.4.2.)호)

2블록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3블록

- ① 산업용지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35)
 - 출판업(58)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22개항목)"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 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근거 : 산통부 입지총괄과-586(2014.4.2.)호)

② 지식산업센터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 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가구 제조업(32)
- 기타제품 제조업(33)
- 지식산업 27종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전기 통신업(612)

(변경)

(1270)	통합업종	
구 분	업종	분류번호
	1. 섬유제품 제조업:마 <u>스크(13229)</u> 만 허용	13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1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개별	7. 전기장비 제조업	28
입지 (14조)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u>(14종)</u>	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0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31312)만 허용	31
	11. 기타 제품 제조업	33
	12. 태양에너지 발전업	35
	1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14. 출판업	58
	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0
	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7. 1차 금속 제조업	24
	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7 1 ≀1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지식 산업	11. 전기장비 제조업	28
센터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23 종)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15. 가구 제조업	32
	16. 기타 제품 제조업	33
	17. 태양에너지발전업	35
	18. 출판업	58
	1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20. 정보서비스업	63
	21. 연구개발업	70
	22. 전기 통신업	612
	23. 지식산업 27종(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2) 입주제한 업종 (변경)

(기정)

1블록

• 도금업(25922) 등 60개 업종 "별첨 #4"

2블록

-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26600)
- 광섬유케이블 제조업(28301)
-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28302)

-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28303)
- ※ 단, 상기업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별표2)]만을 악취배출 시설로 가주하여 입주제하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 된 한국산업분류코드 (KSIC-10) 번호 임

3블록

① 산업용지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25111)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25112)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25121)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25122)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2513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25200)
- 도금업(25922)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28303)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30202)
-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30203)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일반 창고업(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을 제외한 전 업종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② 지식산업센터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 1차 철강 제조업(241)

(변경)

- 입주대상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은 입주제한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단, 소음·진동방시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미만 유지·관리 업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업종(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외)
- <u>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관련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배출업체</u> 입주제한(단, 부설연구소 및 연구목적 시설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2[별표13의2] 에 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제외)

-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관련시설 최대가동 환경에서 측정 및 환경부지정 검사기관 결과로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제조, 보관, 저장하는 업종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22개항목)"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매매·경매·기타)전에 산업단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 허용업종 중 입주제한업종 및 분류번호

<u>▼ 이중월중</u>	♥ 허용업공 중 입주세안업공 및 분규먼오			
구 분	제한업종 업종			
	1. 섬유제품 제조업(13) 중 마스크제조업(13229)을 제외한 전 업종	<u>분류번호</u> 13		
	2. 도금업(25922) 등 60개 업종"별첨 #4"	<u>15</u> 25922 등		
	2. 모급입(25922) 등 60개 입중 일점 #4 3.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1		
		25111		
	4.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5.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3		
	6.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7.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9		
	8.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1		
	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10.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23		
	11.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개별	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1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입지	14.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6600		
	15. 일차전지 제조업	28201		
	16. 축전지 제조업	28202		
	17. 광섬유케이블 제조업	28301		
	18.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28302		
	19.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	28303		
	20.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21.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업	30202		
	2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중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31312)을 제외한 전 업종	<u>31</u>		
	2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일반 창고업 (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을 제외한 전 업종	52		
	[1. 도금업(25922) 등 60개 업종"별첨 #4"	25922 등		
지식	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2, 15110, 14499		
- ' ' 산업	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		
	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		
센터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6. 1차 철강 제조업	241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 된 한국산업분류코드 (KSIC-10) 번호 임

3) 입주자격 (변경)

(기정)

구분	1블록	2블록	3블록
산업 시설 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한 지식기반 산업 보관· 창고·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 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 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수도권 내 기존공장의 이전에 한함 •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 시설 구역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	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 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 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복합 구역			• 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자격을 각각 따름

(변경)

구분	입 주 자 격
산업 시설 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한 지식기반 산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부지에 한함)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지원 시설 구역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복합 구역	• 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자격을 각각 따름

4) 입주우선순위 (변경없음)

- ① 산업시설구역
 - 수원시 입주대상자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
 -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 ※ 관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업체는 수원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일(수도권정비위원회 제553호)인 2008.8.12일 이후 이전하는 공장에 한함.

② 지워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지원기관)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산업단지의 관리) 및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5) 입주절차 (변경없음)

-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

1) 목 표 (변경없음)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 ①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②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기 설치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2블록)
- 산업단지 내·외에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휴식, 운동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축조 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고, 입주업체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③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④ 기반시설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3)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 ① 공장설립 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완료 신고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② 생산활동 지원

-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 산 · 학 · 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③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 단지 내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공원시설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 종업원 통근용 공동 전세버스 운영 : 운영주체를 관리기관 또는 민간위탁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한다.
 - ※ 단, 국토교통부에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⑤ 지원시설 설치계획

• 관리청사, 금융시설, 후생시설, 차량관련시설, 공공업무시설, 복지회관 등

⑥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 면적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 후단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 중소기업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산업단지 명칭 : 기정) 수원 델타플렉스(SUWON DELTAPLEX) 1, 2, 3블록 변경) 수원 델타플렉스(SUWON DELTAPLEX)

(별첨 #1)

수원델타플렉스 용도별 구획 평면도(기정)



수원델타플렉스 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



수원델타플렉스 업종별 배치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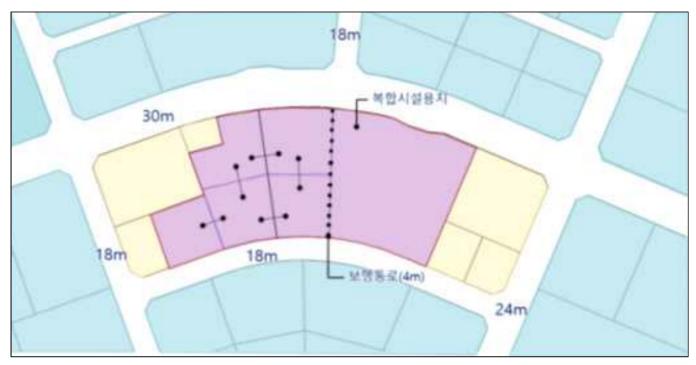


수원델타플렉스 업종별 배치도(변경)



(별첨 #3)

수원델타플렉스 복합용지도



- ※ 단일필지에 건축물 입주시 보행통로는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2m로 하되 담장등 이와 유사한 차폐시설의 설치로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다.
- ※ 지식산업센터 입주시 보행통로는 피로티 형식등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토록 설치하도록 한다. 피로티 형식의 보행통로 설치시 보행통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의 1/2 범위 내에서 이동하여 설치 가능하며, 필지 합병시에도 기준은 현재의 대지 경계로 한다. 이 외에 설치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 ※ 공동건축 가능 필지내에서 공동건축시 필지 합병은 가능하나 합병된 필지를 분할시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별첨 #4)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제한업종(KSIC-10)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비고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석탄 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콜타르 피치 포함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비고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칠기 가구 통합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01	건반악기 제조업	오르간 등 건반악기 포함
33202	전자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현악기, 국악기 통합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볼링용구 및 관련 장치물제조 포함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조화 및 모조 장식품, 교시용 모형 통합
33933	표구처리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 용품 제조업	
33993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우산,지팡이 통합

(별첨 #5)

□ 추진경위(변경)

- 1995.09.23 : 1단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 2002.07.10: 1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테크노게임밸리 → 지방산업단지)
- 2003.04.28 : 1단지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도고시 제2003-83호)
- 2003.12.22 : 1단지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도고시 제2003-325호)
- 2004.06.05 : 1단지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04-174호)
- 2005.02.28 : 2단지 수원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수도권정비위원회 제450호)
- 2006.05.09 : 2단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경기도 고시 제2006-142호)
- 2006.08.07 : 1단지 수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06-248호)
- 2006.12.06 : 2단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1·2단계 통합)
- 2007.07.10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007-212호)
- 2007.12.31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7-489호)
- 2008.01.14 : 1단지 수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08-3호)
- 2008.12.04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개발 및 (경기도 고시 제2008-482호)
- 2008.12.26 : 3단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수원시 고시 제347호)
- 2009.02.11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인기(경기도 고시 제2009-57호)
- 2009.11.22 : 3단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규모 개발사업) (수도권정비 안건번호 제597호)
- 2010.05.1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수원시 고시 제2010-123호)
- 2010.08.19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수원시 고시 제2010-206호)
- 2010.10.29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업종 재배치 및 면적조정)
- 2010.11.09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수원시 고시 제2010-266호)
- 2011.11.14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업종 재배치 및 면적조정)
- 2011.11.28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수원시 고시 제2011-222호)
- 2012.09.21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12-294호)
- 2013.06.20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13-170호)
- 2013.09.13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수원시 고시 제2013-269호)
- 2014.01.24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수원시 고시 제2014-19호)
- 2014.03.19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원시 고시 제2014-70호)
- 2014.07.01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14-189호)

- 2014.07.01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2014-191호)
- 2014.08.18 : 3단지 수워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지원시설용지 획지 분할 등)
- 2014.09.0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수원시 고시 제2014-186호)
- 2014.12.29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인쇄업 및 지식산업센터 반영 등)
- 2015.01.2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수원시 고시 제2015-23호)
- 2015.03.30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15-5049호)
- 2015.04.20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수원시 고시 제2015-93호)
- 2015.11.27 : 3단지 수워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인쇄출판 부지 및 지식산업센터 업종 추가)
- 2015.12.04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수원시 고시 제2015-2035호)
- 2016.04.0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수원시 고시 제2016-102호)
- 2016.04.07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변경)고시(수원시 고시 제2016-106호)
- 2016.04.2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6-115호)
- 2016.04.2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6-116호)
- 2016.06.03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6-153호)
- 2018.02.01 : 3단지 수원산업단지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8-30호)
- 2019.04.19: 3단지 수워 일반산업단지(3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수워시 고시 제2019-122호)
- 2019.05.23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9-161호)
- 2019.06.12 : 3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3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9-184호)
- 2019.07.12 : 1.2다지 수원일반산업다지(1.2다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도고시 제2019-5107호)
- 2019.11.08 : 수워델타플렉스(1.2.3블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9-352호)
- 2019.11.15 : 수원델타플렉스(1.2.3블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수원시 고시 제2019-358호)
- 2020.03.30 : 수원델타플렉스(1,2,3블록)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수원시 고시 제2020-95호)
- 2020.03.31 : 수원델타플렉스(1,2,3블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수원시 고시 제2020-94호)
- 2022.05.18. :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수원시 고시 제 2022-211호)